

#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퇴직자 조직화 방안

2020.12. | 김윤호



연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집필자 약력

- 김윤호** (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전) Visiting Scholar, School of Management  
and Labor Relations, Rutgers University

## 연구서를 펴내며

지금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7%이며,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65세 이상 취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금소득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고령자의 취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퇴직노동자들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OECD국가에서 매우 높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프랑스(3.6%), 노르웨이(4.3%), 독일(10.2%), 캐나다(12.2%) 등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퇴직노동자들을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노동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노동운동은 퇴직자 조직화를 통한 생활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자 조직화는 한국의 노조조직률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조합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에서는 오랫동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역사를 지닌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퇴직자 조직화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에서 퇴직자 조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를 맡아 주신 김윤호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연구서가 향후 한국사회에서 퇴직자 조직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명



# 목 차

|   |           |
|---|-----------|
| <b>제1장 서론</b> .....                         | <b>1</b>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3         |
| 1. 연구의 배경: 퇴직자 조직화의 필요성 증대 .....            | 3         |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퇴직자 조직화 해외사례 조사 .....        | 5         |
| 제2절 연구의 방법 .....                            | 6         |
| <b>제2장 퇴직자 조직화 해외사례</b> .....               | <b>7</b>  |
| 1. 북미건설공노동조합 (LIUNA) .....                  | 9         |
| 2. 전미자동차노동조합 (UAW) .....                    | 13        |
| 3. Workers United .....                     | 18        |
| 4. 미국통신노동조합 (CWA) .....                     | 22        |
| 5. 미국우편노동조합 (APWU) .....                    | 25        |
| 6.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CURC) .....                  | 28        |
| 7. 영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UNISON) .....               | 34        |
| 8. 독일서비스노동조합 (Ver.di) .....                 | 37        |
| 9. 이탈리아노동자총연맹 (CGIL) 퇴직자노조 (Spi) .....      | 41        |
| <b>제3장 결론</b> .....                         | <b>51</b> |
| 제1절 해외 사례조사 요약 .....                        | 53        |
| 제2절 한국 퇴직자 조직화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 .....          | 55        |
| <b>부록</b> .....                             | <b>59</b> |
| <부록1> 북미건설공노동조합(LIUNA) 규약 중 퇴직자 관련 조항 ..... | 61        |
| <부록2> 북미건설공노동조합(LIUNA) 퇴직자협의회 규약 .....      | 66        |
| <부록3>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CURC) 규약 .....             | 71        |

## 표 목차

|   |    |
|---|----|
| 〈표 2-1〉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 9  |
| 〈표 2-2〉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 13 |
| 〈표 2-3〉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수준별 퇴직자조직 .....              | 15 |
| 〈표 2-4〉 Union Plus 혜택 .....                     | 17 |
| 〈표 2-5〉 Workers United의 퇴직자 조직화 .....           | 18 |
| 〈표 2-6〉 미국통신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 22 |
| 〈표 2-7〉 미국통신노동조합 퇴직자분회 조합원 수에 따른 대표단 수 배정 ..... | 24 |
| 〈표 2-8〉 미국우편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 25 |
| 〈표 2-9〉 캐나다 퇴직자조합회의의 퇴직자 조직화 .....              | 28 |
| 〈표 2-10〉 캐나다 퇴직자조합회의의 조합비 .....                 | 33 |
| 〈표 2-11〉 영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 34 |
| 〈표 2-12〉 독일 Ver.di의 퇴직자 조직화 .....               | 37 |
| 〈표 2-13〉 이탈리아 CGIL의 퇴직자 조직화 .....               | 41 |
| 〈표 2-14〉 퇴직자 조직화 해외사례 요약표 .....                 | 47 |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캐나다 퇴직자조합회의(CURC)의 조직구조 ..... | 31 |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퇴직자 조직화 방안



# 제 1 장

# 서 론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퇴직자 조직화의 필요성 증대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기업단위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자에 대한 조직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노진귀(2008)<sup>1)</sup>는 미국과 일본의 은퇴자조합 실태를 조사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퇴직자의 조직화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외 사례연구나 조직화방안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 연구에서는 퇴직자 조직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이유로 1) 한국의 퇴직 노동자들이 무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점과, 2) 고령사회의 급진전으로 이러한 퇴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3) 퇴직자의 노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력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지적은 현재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노동문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확대 등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

1) 노진귀. (2008). 미국과 일본의 은퇴자조합 실태. 노동저널: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2008(2), 1-16.

득이하 50% 이하)이 시장소득기준으로 2011년 56.9%에서 2018년 58.5%로 1.6%포인트가 증가하였다(이주미 외, 2020).<sup>2)</sup>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퇴직노동자들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에 주로 종사하거나 충분치 않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둘째, 고령화와 고령자의 취업자 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인 2005년보다 약 200만 명 증가한 662만 명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7%,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전망이다.<sup>3)</sup> 이에 더하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에 1,553천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수는 2019년에 2,538천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금소득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노동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고령자의 취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근로연령 빈곤율과 퇴직연령 빈곤율의 상대배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5.4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1.3에 비하여 4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sup>4)</sup>

셋째,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자에 대한 조직화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에 19.8%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9.8%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큰 상승을 나타내지 못하고 2018년에 11.8%로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2) 이주미, & 김태완. (2020).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193-221.

3) 통계청. 2020. 2020 고령자 통계.

4)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건·복지 Issue & Focus, 364, 1-8.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되면 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법적 환경변화는 노동조합에게 조직화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 앞서 살펴본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사회적 책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퇴직자 조직화 해외사례 조사

노진귀(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자동차노조의 은퇴자조합 사례, 그리고 일본의 렌고 산하 퇴직자연합, 자치체퇴직회, 니싼노련 엘터클럽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연구 이외에는 본격적으로 퇴직자 조직화의 사례를 살펴본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퇴직자 조직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조사를 통해 조사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 명칭: 퇴직자를 조직화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이름
- 국가: 해당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노동자가 있는 국가
- 본조 개요: 퇴직자를 조직화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년도, 조합원수 등 기본정보
- 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자의 요건
- 조직방식·구조: 본조와의 조직 구조적 관계, 퇴직자 조합의 자체적 조직구조
- 조합원 지위·권리: 본조 일반조합원과의 조합원 권리 차이여부 및 특성
- 조합원 의무: 퇴직자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무 특성 및 기타 의무사항
- 조합원 혜택: 퇴직자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

## 제2절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퇴직자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 발굴 - 연구 내용 관련정보의 획득 가능성 여부 확인 -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 규약, 조합가입 안내문 등 번역 - 연구내용별 조사내용 정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넷사이트는 영문사이트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는 각 사이트에서 각국의 언어를 영문으로 전환하는 인터넷브라우저 기능을 활용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간접 번역방식을 활용하였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자 조직화 여부는 확인하였지만 본 조사에서 목적으로 하는 조사내용을 대부분 확인하기 어려운 몇 개의 사례<sup>5)</sup>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조사에 포함된 노동조합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북미건설공노동조합(LIUNA)
2. 전미자동차노동조합 (UAW)
3. Workers United
4. 미국통신노동조합 (CWA)
5. 미국우편노동조합 (APWA)
6. 캐나다노총 퇴직자조합회의 (CURC)
7. 영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UNISON)
8. 독일서비스노동조합 (Ver.di)
9. 이탈리아노동자총연맹 연금노조 (Spi)

---

5) 미국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of America; TWU), 캐나다전력노조(Power Workers' Union) 퇴직자지부(Retired Workers' Chapter), 캐나다우편노조(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퇴직자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Retired Postal Workers), 아일랜드노총(Irish Congress of Trade Union; ICTU), 퇴직자협의회(Retired Workers Committee)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퇴직자 조직화 방안



## 제 2 장

# 퇴직자 조직화 해외사례







## 퇴직자 조직화 해외사례

### 1. 북미건설공노동조합 (LIUNA)

〈표 2-1〉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3년 설립, 건설공 및 설비직 대상, 조합원 50만 명</li> <li>• 9개 지구, 44개 구역, 400여 개 지역지부</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북미건설공노동조(LIUNA)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자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직화</li> <li>• 본조·지부의 제휴·협력단체의 성격</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회원' 내지 '명예회원'의 성격 (별도 권리 규정 없음)</li> <li>• 총회에서 발언권·투표권 부여되지 않음</li> <li>• 정치활동, 캠페인, 멘토링 등 본조를 지원하는 활동에 국한</li> </ul>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협의회별로 정한 조합비 월별 납부</li> <li>• 본조에 저촉되는 활동 불가</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조·지부로부터의 공식적인 혜택은 없음</li> <li>• 협의회 내 각종 위원회(committee) 결성을 통한 자족적 해결</li> <li>• 법률적·정치적 정보를 공유하고 입법·정치활동 등 목소리 대변</li> </ul> |

#### 가. 본조 개요

북미건설공노동조합(Laborers' International Union of North America, 이하 LIUNA)은 1903년 조직된 미국과 캐나다의 건설노동자 및 에너지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국제 노동조합이다. 현재 총 5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이 중 8만 여명은 캐나다의 조합원이다. LIUNA는 중부·동부 캐나다, 서부 캐나다, 미국동부, 오대호, 미국 중부 애틀랜타, 미국중서부, 뉴잉글랜드, 오하이오 벨리, 남서태평양 등 총 9개 지역(Region) 하에 44개의 구역(District), 400여개의 지부(Local unions)를 두고 있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LIUNA는 주(州)별 또는 시(市)별로 퇴직자협의회(Retiree Council)를 퇴직자가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IUNA의 규약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LIUNA의 설립 목적으로는 ‘퇴직자에게 사회 및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은퇴한 회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조합이 주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IUNA는 퇴직자협의회 설립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각 지역별 퇴직자협의회의 통일적인 규약양식을 제시하는 등 퇴직자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퇴직자 협의회의 회원은 LIUNA의 조합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경우에 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당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는 퇴직자 협의회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LIUNA의 규약에서는 지부의 의무 중 하나로서 본조에 매월 퇴직자 조합원 1인당 5달러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거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조합원이 정년 도달 등으로 퇴직한 후에도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지부의 회원으로서 남아있어야 하고, 이들이 퇴직자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퇴직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성된 퇴직자협의회는 지부(Local union)의 가맹 조직 내지 협력조직(Affiliates)으로서의 성격 또는 지역(Region)내 독립적인 퇴직자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LIUNA에서 발간한 「퇴직자협의회 결의안



(Retiree Council Resolution)』에 따르면 퇴직자협의회는 LIUNA 또는 지부의 대리인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LIUNA나 지부가 퇴직자협의회의 자율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의하고 있어 본조와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자협의회에 가입할 퇴직자를 찾는 과정부터 운영하기 위한 자금조달, 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등을 모두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나 LIUNA의 승인 하에 퇴직자 명단이나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퇴직자협의회가 지부나 본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LIUNA의 퇴직자협의회는 3개의 수준(Level)에서 조직된다. 첫째, 지부(Local union) 수준으로서 400여개의 지역지부에 속한 퇴직자 조합원이 스스로 결성한다. 둘째, 지역(Region) 수준으로서 상기한 9개 지역에는 각각의 지역별 퇴직자 협의회(Regional Retiree Council)가 설립되어 있다. 셋째, 전국 수준으로서 9개 지역별 퇴직자협의회는 ‘전국퇴직자협의회(National Retiree Council)’를 조직화하여 LIUNA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각 퇴직자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Secretary-treasurer), 서기(Recording secretary) 및 3명의 감사(Trustees) 등 임원을 퇴직자 회원들이 선출하고, 이에 따라 LIUNA 본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또한 퇴직자협의회에 대의원회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퇴직자협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퇴직자 조합원은 일반 조합원과는 달리 ‘후원단체의 회원’ 또는 ‘명예 회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본조인 LIUNA의 규약에는 퇴직자 조합원에 대한 권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고, 특히 본조 규약에서는 ‘퇴직중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지부 총회에서 발언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에 비해 권리행사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규약에서 '퇴직자 조합원은 그들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하여 지부 총회에서 발언 및 투표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느 정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로비 등 정치활동이나 캠페인 수행, 조합원에 대한 멘토링, 지역사회활동 등 통상적인 조합활동 역시 보장된다.

## 2) 조합원의 의무

비록 퇴직자협의회가 본조와 독립적인 조직체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LIUNA가 제공한 「퇴직자협의회 규약(Uniform LIUNA Retiree Council Constitution)」에서 '퇴직자협의회는 본조의 정책에 반하는 활동·발언 또는 간행물의 발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퇴직자협의회는 본조 집행위원회나 그들을 후원하는 지부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자 조합원은 이러한 규정에 구속된다. 또한 퇴직자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각 퇴직자 위원회의 조합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퇴직 조합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LIUNA의 퇴직자협의회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자립적이므로 퇴직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족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따라서 퇴직자조합원에 대한 혜택은 본조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퇴직자협의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Committee)를 두고 퇴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거, 건강, 재정 등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률적·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퇴직자와 관련된 입법이나 복지제도 신설·개선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전미자동차노동조합 (UAW)

〈표 2-2〉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및 푸에르토리코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5년 설립, 조합원 수 40만 명</li> <li>• 8개 지역, 600개 이상의 지부</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자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W 본조가 4가지 수준에서 조직화<br/>지부(Local union) 산하 퇴직자 분회<br/>지구(Area) 퇴직자 협의회<br/>지역(Regional) 퇴직자 협의회<br/>국제(International) 퇴직자 자문위원회</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 특정 선거의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일반조합원의 권리를 가짐   |
| 조합원 의무      | • 조합비 납부 의무 없음 (월 \$3 자발적 납부)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조합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음 (예 : Union Plus 복리후생).</li> <li>• 여가활동 지원, 운동 프로그램 제공, 지역 봉사활동 참여</li> </ul>  |

### 가. 본조 개요

전미자동차노동조합(The International Union, United Automobile, Aerospace, and 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erica, 이하 UAW)은 1935년 미국산별노조회(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의 산하단체로 조직된 단체로서, 현재 미국·캐나다·푸에르토리코의 4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노동조합이다. 현재 8개 지역(Region)에 600개 이상의 지부(Local unions)로 조직되어 있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UAW의 퇴직자 조직화는 1949년 트루먼대통령의 국가노사관계위원회(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 기업이 노동조합과 연금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이후 당시 UAW의 위원장이었던 Walter Reuther가 국민에게 연금과 관련된 지지를 얻기 위한 집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49년 9월 포드(Ford)에 대한 파업을 통해 30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만65세에 월 100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성공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퇴직자에 대한 의료 혜택,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 권리 등을 추가해나가면서 연금제도를 개선해 나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침내 UAW 조직 내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조직화를 본격화하였는데, 1957년 총회에서는 ‘노년 퇴직자 및 기타 시민을 위한 UAW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66년 총회에서 지부(Local)·지구(Area)·지역(Region)·국제(International)의 4가지 수준의 퇴직자 조직화 방안이 결정되면서 이후 본조의 계획과 지원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UAW는 60만 명 이상의 퇴직자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부(Local), 지구(Area), 지역(Regional), 국제(International) 등 4가지 수준에서 퇴직자를 조직화한다. 그에 따른 퇴직자조직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3〉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수준별 퇴직자조직**

| 수준                | 조직화  |
|-------------------|--|
| 지부(Local Union)   | 지부퇴직자분회<br>(Local Union Retired Workers Chapter)               |
| 지구(Area)          | 지구퇴직자협의회<br>(Area Retired Workers Council)                     |
| 지역(Regional)      | 지역퇴직자협의회<br>(Regional Retired Workers Council)                 |
| 국제(International) | 국제퇴직자자문위원회<br>(International Retired Workers Advisory Council) |

첫째, 지부 수준으로 ‘지부퇴직자분회 (Local Union Retired Workers Chapter)’는 해당 지부에 퇴직자가 25인 이상인 경우에 지부가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지구 수준으로 ‘지구퇴직자협의회(Area Retired Workers Council)’는 UAW의 8개 지역 이사(Regional Director)가 지정된 지구(area) 별로 설립한다. 셋째, 다소 범위가 넓은 주(州) 등의 지역 수준으로 ‘지역퇴직자협의회 (Regional Retired Workers Council)’는 지역 이사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설립하며, 지역퇴직자협의회회의 대표단은 각 지부 산하 퇴직자 분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국제퇴직자 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Retired Workers Advisory Council)’는 본조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퇴직자 조직체로서, 8개 지역퇴직자협의회(RRWC)에서 대표자가 1명씩 선출되어 각 지역의 퇴직자조합원을 대표한다. 이때 국제퇴직자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본조(UAW)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한편 본조에는 퇴직자 지원부서(Retired Workers Department)가 설치되어 있어 본 부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진행된다.

##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UAW의 규약 제6조 제19항에서 회비를 납부한 퇴직조합원은 단체협약 인준 투표권과 파업 찬반투표의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모든 일반조합원의 권리를 가지는 “퇴직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비록 퇴직자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지역 지부의 집행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가지고 그 직을 역임하는 등 퇴직자 조합원이 일반 조합원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2) 조합원의 의무

1966년 퇴직자 조직화 방안과 함께 퇴직자 조합원은 조합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결까지 포함되었고, UAW의 규약 제6조 제19항에서 ‘회비를 납부한 퇴직조합원은 퇴직한 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1966년 의결 당시 월 1달러의 자발적 조합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후 다수의 퇴직자 조합원이 퇴직자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 조합비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여 자발적 조합비는 1달러에서 2달러, 3달러로 인상되어 그 결과 현재 약 75%의 퇴직자 조합원이 월 3달러의 자발적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다.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자조합원은 특정 선거의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일반조합원의 권리를 가지므로 일반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Union Plus의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Union Plus란 미국노총(AFL-CIO)이 1986년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Union Privilege에서 조합원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이다. Union Plu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신용카드, 자동차 구매 특전, 건강보험, 여행상품, 대학 장학금, 가정용 난방 할인, 통신비 할인(AT&T), 반려동물보험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표 2-4〉 Union Plus 혜택

| 혜택 구분 | 세부적 혜택 내용  |
|-------|--|
| 1. 금융 | 1) 회원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발급<br>2) 우대금리 대출<br>3) 부채 정산 프로그램 등 신용상담 서비스<br>4) 온라인 송금 수수료 할인 |
| 2. 주택 | 1) 조합이 운영하는 모기지론(부동산담보대출)<br>2) 주택 판매 시 캐시백  |

| 혜택 구분    | 세부적 혜택 내용  |
|----------|--|
|          | 3) 전문 이사업체 할인<br>4) 중개업체 할인혜택 및 법률서비스 제공   |
| 3. 차량    | 1) 차량 시세 조회 서비스<br>2) 타이어 구매 시 할인<br>3) 조합 소속 업체 제품 리베이트 (\$100)<br>4) 차량 대여비 할인 |
| 4. 여행/레저 | 1) 패키지 여행 할인<br>2) 호텔 및 레스토랑 할인<br>3) 이벤트, 콘서트, 테마파크 입장료 할인                      |
| 5. 의료    | 1) 퇴직자 건강보험<br>2) 치과 및 안과 회원 특별 혜택<br>3) 약제 처방 할인                                |
| 6. 교육    | 1) 대학 학비 지원<br>2) 장학금 지원   |
| 7. 보험    | 1) 건강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 8. 기타 혜택 | 1) 무선통신 서비스 할인 (AT&T)<br>2) 가정용 난방 할인  |

그 외에도 지부 산하 퇴직자 분회를 중심으로 예술 및 공예 박람회, 낚시, 골프대회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을 지원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조직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퇴직조합원의 배우자는 지부 산하 퇴직자 분회에서의 전체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준회원의 경우에도 가입 시 조합비 납부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 조합비로 월 2달러를 모금하고 있다. 다만, 준회원은 퇴직자 조합원이나 일반 조합원과 같이 지부 활동에 대한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 3. Workers United

〈표 2-5〉 Workers United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결성.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대상 85,000명의 조합원</li> <li>• 상급단체 : 북미서비스노조(SEIU)</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kers United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자</li> </ul>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조가 조직한 퇴직자 협회(Retirees Association)</li> <li>• 퇴직자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역 퇴직자 지부(Local chapter)</li> <li>• 퇴직자협회와 퇴직자지부를 연결하는 퇴직자 지역회(Regional Assembly)</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회원’에 가까운 지위</li> <li>• 총회 참여권은 있으나, 투표권 및 임원 피선거권은 없음</li> <li>• 퇴직자조합원 500명 당 1인의 대표(최대 15명)가 본조 총회에서 투표권 행사 (임원 선거권 제외)</li> </ul>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3달러의 조합비 납부</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조합원과 동일한 혜택: Union Plus, 교육 프로그램 등</li> <li>• 고령자 복지제도 및 법안 동향 등 정보 제공</li> </ul>  |

#### 가. 본조 개요

Workers United는 미국과 캐나다의 섬유산업, 세탁업, 제약산업 및 게임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9년에 결성된 국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약 8만 5천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Workers United는 본래 2004년 전미봉제섬유 노동조합(Union of Needletrades, Industrial and Textile Employees, UNITE)과 전미호텔요식업노동조합(Hotel Employees and Restaurant Employees Union, HERE)이 합병하여 결성된 ‘UNITE HERE’를 그 모체로 한다. 이후 2009년 내부 갈등을 겪고 난 후 Workers United가 분리되면서 신설되었다.

한편 Workers United의 상급단체는 ‘북미서비스노동조합(Service Employee



International Union, 이하 SEIU)으로, 1921년 시카고의 건물 청소노동자와 엘리베이터 조직원들이 결성한 'Building Services Employees Union'을 시초로 하여 그 가입범위를 점차 넓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여 종류의 서비스 직무에 종사하는 2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노동 조합이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Workers United의 퇴직자협회(Retirees Association)는 본조인 Workers United가 조직화한 본조 산하 공식단체이다. Workers United는 일반 조합원과 구별되는 퇴직자 회원제도(membership)를 따로 운영하여 두고, 이들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퇴직자협회를 조직하는 한편 퇴직자 조합원이 본조 산하 지부에서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면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퇴직자협회의 가입대상은 Workers United의 조합원 또는 Workers United에 합병된 이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55세에 도달한 자로서 이들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Workers United의 근로자 즉, 본조가 채용한 자로서 퇴직한 자 역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Workers United의 퇴직자 조합원 조직방식은 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①본조 집행위원회의 '퇴직자협회(Retiree Association)'의 조직 ②본조 산하 지부에서 퇴직자 조합원들의 '퇴직자지부(Local Retiree Chapters)'의 조직 ③그리고 이들 퇴직자지부들과의 소통을 돕는 '퇴직자지역회(Region Assemblies)'의 조직이 바로 그것이다. 즉 본조의 퇴직자협회(Retiree Association)는 규약에 따라 퇴직자를 조직화하는 일종의 하향식 접근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퇴직자지부(Local Retiree Chapters)의 경우에는 퇴직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상이한 조직화 방식을 중간 수준에서 연결해주는 퇴직자지역회(Region Assemblies)가 존재한다.

한편 Workers United의 위원장이 퇴직한 경우에는 명예위원장직(President Emeritus)을 갖게 되고 현직 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고문 서비스를 본조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 등이 퇴직한 경우에도 현직 위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장의 승인으로 별도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Workers United 규약 제4조 제10항).

##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Workers United의 규약 제16조에서는 퇴직자 조합원의 지위(Retiree membership)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 조합원은 본조나 지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간부로서 직접 활동하거나 본조나 지부에서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한다. 또한 지역지부의 조합원 수를 계산할 때 퇴직자 조합원은 그 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퇴직자조합원 500명당 1명의 비율로서 본조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투표권<sup>6)</sup>을 가진 대표자(최대 15명)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제 2013년에는 퇴직자협회의 대표 15명이 Workers United의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바 있다. 요컨대 Workers United의 퇴직자 조합원은 ‘준회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

한편 Workers United의 퇴직자 대표는 상급단체인 북미서비스노동조합(SEIU)에서의 대표권도 가지는데, SEIU의 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SEIU의 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40인 중 1인은 퇴직자를 대표하는 퇴직자 조합원이어야 하며, SEIU 본조위원장은 퇴직자 조합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자문위원회의

---

6) 다만 퇴직자 대표단이 본조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Workers United 임원에게 투표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Workers United 규약 제16조 제6항)

위원장으로 반드시 퇴직자 조합원을 임명해야 한다.

## 2) 조합원의 의무

퇴직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조에 월 3달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자 조합원 역시 본조의 회원 자격(Membership)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 규약을 준수하고 본조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갖는다.

##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비록 퇴직자 조합원은 일반 조합원에 비하여 제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 조합원이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동일한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예컨대 Workers United의 퇴직조합원 역시 미국노총(AFL-CIO)에서 제공하는 Union Plus의 복리후생을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표 2-4〉 참조), 본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청 역시 가능하다.

그 외에도 퇴직자 조합원에 적합한 서비스를 퇴직자협회 차원 및 퇴직자지부 차원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데, 본조 산하 퇴직자협회에서는 사회보장, 의료보험과 같은 고령자와 직결되는 복지제도나 그 법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각 지역별 퇴직자지부에서는 지역 연극, 축제, 단체 여행,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퇴직자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 4. 미국통신노동조합 (CWA)

〈표 2-6〉 미국통신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및 푸에르토리코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7년 설립, 조합원 수 70만 명</li> <li>• 8개 구역(District) 또는 7개 산업섹터</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통신노조(CWA) 조합원이었던 자로서 퇴직한 자</li> </ul>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조의 규약에 의하여 '퇴직자협의회' 조직</li> <li>• 퇴직자 조합원은 각 퇴직자협의회(분회) 중 하나에 참여</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li> <li>• 공식적 분회로서의 퇴직자협의회는 본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대표단을 할당받음.</li> </ul>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회비 (1회 25달러) 납부</li> <li>• 그 외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 부담</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 (금융서비스, 주택서비스, 각종 보험 및 할인혜택, Union Plus 등)</li> </ul>                                      |

##### 가. 본조 개요

미국통신노동조합(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이하 CWA)은 1947년에 설립된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노동조합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7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CWA는 8개의 구역(Districts) 및 7개 산업섹터(항공기 조종사, 전화 및 케이블TV, 무선통신기술, 기계·전자조립, 공공보건 및 교육, 언론, 방송)로 구분하여 조직되어 있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CWA의 퇴직자 조직화는 본조의 규약과 내규 및 체계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즉 CWA에서는 퇴직자 조합원을 평생회원으로 전환케 한 후 이들을 과거 소속했던 각 구역 또는 산업섹터의 지부에 CWA가 조직한 퇴직자협의회에 가입하게 한다. 퇴직자 조합원은 일반 조합원과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CWA 퇴직자 협의회의 가입대상으로는 CWA의 조합원이었던 자가 정년이나 연령 또는 장애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 퇴직자 조합원으로 가입 내지 변경신청한 자가 된다. 이 때 조합원은 평생회비(1회 25달러)를 지불함으로써 퇴직자 조합원이 된다.

퇴직자 조합원이 된 자는 각 구역 및 산업섹터별 노동조합에 조직된 퇴직자 협의회에 소속된다. 퇴직자 협의회는 CWA의 규약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본조 산하의 퇴직자분회(Retired Members' Chapters)이다. 따라서 퇴직자협의회의 조직화와 그에 따른 조직구조 역시 CWA가 정한 내규에 의하여 수행·결정된다. 퇴직자협의회는 각 구역(District)의 대표자 2명과 언론분야(Sector) 대표 2명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실질적인 퇴직자협의회의 대표자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재무·회계감사·선거·커뮤니케이션 등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Committee)'로 구성된다. 한편 각 집행이사의회의 대표 4명은 각각 구역회장·부회장 및 분야회장·부회장이 된다.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CWA의 규약에서는 본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재직이나 휴직, 정규직과 파트타임, 퇴직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계속하여 정회원(active member)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퇴직자협의회가 본조의 분회로서 조직되어 기능하므로 퇴직자 조합원은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분회로서의 퇴직자협의회는 본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대표단을 할당받는다. 대표단은 분회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7〉 미국통신노동조합 퇴직자분회 조합원 수에 따른 대표단 수 배정**

| 분회 조합원 수          | 대표단 수       |
|-------------------|-------------|
| 25명 미만            | 1명          |
| 25명 이상 50명 미만     | 2명          |
| 50명 이상 75명 미만     | 3명          |
| 75명 혹은 그에 상당하는 경우 | 3명 + 1명씩 추가 |

또한 전술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구역(District)회장과 섹터(Sector) 회장은 본조(CWA) 총회의 대표단 역할을 하여 각각 1표씩 행사할 수 있다(CWA 퇴직자협의회 규약 제9조).

2) 조합원의 의무

상기한 바와 같이 평생회원으로서의 퇴직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5달러의 조합비를 1회 납부하여야 한다(CWA 퇴직자협의회 규약 제5조, 또한 퇴직자 조합원은 정회원으로서의 본조 조합원의 자격을 동등하게 가지므로 본조 규약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진다.

###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퇴직자 조합원은 CWA의 정회원으로서는 일반 조합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CWA는 조합원에 대하여 신용카드·금융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모기지론·이사지원 등 주택 관련 서비스, 건강·의료보험, 자동차구매·정비 서비스, 장학금, 여행상품 할인,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CWA는 미국노총(AFL-CIO)에서 운영 중인 Union Plus를 제공(〈표 2-4〉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는 퇴직자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 5. 미국우편노동조합 (APWU)

〈표 2-8〉 미국우편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미국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년 설립, 미국 우정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li> <li>• 20만 명의 조합원, 각 주에 걸쳐 900개 이상의 지역지부</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우정청 근로자로서 우편노조(APWU) 조합원 중 퇴직한 자</li> </ul>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조합원의 가입</li> <li>• 10명 이상의 퇴직자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자 지부 결성</li> <li>• 본조 소속 '퇴직자 지원부서'가 퇴직자 조직화를 총괄 관리·지원</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li> </ul>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3달러의 조합비 납부</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조합원과 동일 (금융서비스, 주택서비스, 각종 보험, 할인 등)</li> <li>• 퇴직지원부의 서비스 (은퇴컨설팅, 연금계산, 사망보상청구 등)</li> </ul>                   |

### 가. 본조 개요

1971년 설립된 미국우편노동조합(American Postal Workers Union, 이하 APWU)은 약 20만 명의 미국 우정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 종업원과 퇴직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직무로는 사무직, 유지보수직, 차량서비스직 (Motor Vehicle Service), 지원서비스직의 4가지로 구분된다. APWU는 미국의 모든 주에 걸쳐 900개 이상의 지역지부를 두고 있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APWU의 퇴직자 조직화는 ①퇴직자의 퇴직자 지원부서(Retirees Department)에 가입 ②퇴직자 조합원들이 지부를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이를 본조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APWU의 퇴직자 조직화는 우선 퇴직자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시작된다. 본조 규약에 따르면 APWU와의 교섭 당사자인 미국 우정청으로부터 퇴직한 APWU조합원이 퇴직자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조직화의 대상이 된다.

이후 퇴직자 조합원 10명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퇴직자 지부를 결성하면 APWU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가 수행된다. 이 때 APWU의 ‘퇴직자 지원부서 (Retiree Department)’가 결성된 퇴직자 지부에 대해 지역에 거주하는 퇴직자 목록을 전송하고, 내규 작성이나 업무 설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조직화를 돕는다. 물론 해당 지역에 이미 조직된 퇴직자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 조합원은 퇴직자 지원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APWU 본조 수준에서 퇴직자 전국 대회 (Retiree Convention)를 조직하는데, 당해 대회의 대의원(Delegates)은 3년 임기로 APWU의 전국 선거에서 선출된다.



##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APWU의 규약에서는 퇴직자 조합원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투표권 등을 포함한 완전한 회원(Full Membership)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퇴직자 조합원은 퇴직자 지원부의 장(Director)과 APWU 총회의 5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한다.

### 2) 조합원의 의무

퇴직자 조합원으로서 APWU에서 계속 소속되기 위해서는 월 3달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퇴직자 조합원에 대한 완전한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규약상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반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APWU 제휴 의료보험 및 특약보험(Voluntary Benefit Plan), 제휴 마스터카드, 무료 사망 및 중대 재해보험과 더불어 Union Plus도 퇴직자 조합원 역시 누릴 수 있다. 특히 APWU는 퇴직 지원부 내에 Q&A센터를 운영하여 은퇴 계획수립 및 컨설팅, 연금 계산, 군복무가산(Military Buy-back), 사망보상청구 등 퇴직자 조합원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6.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CURC)

〈표 2-9〉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캐나다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캐나다노총(CLC)의 가맹단체로 설립됨</li> <li>• 조합원(회원) 수 약 50만 명</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 퇴직자 및 배우자 (퇴직 전 소속 노조 CLC 가맹 여부 무관)</li> <li>• 단체 : CURC 가맹·회원조합(Affiliate)</li> </ul>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개인 또는 퇴직자분회가 있는 단체의 가입</li> <li>• CLC의 가맹단체이나 독립적인 조직구조 및 운영</li> <li>• 도시별(지방협의회), 주별(지역연합회), 전국(집행위원회 및 총회)</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C와 무관하게 CURC 내에서 온전히 정회원으로 인정받음</li> <li>•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보장</li> </ul>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비 납부 의무 부담 (1년 \$25, 2년 \$35, 3년 \$50)</li> <li>•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 조합비 차등 적용</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상해, 사망, 여행보험 특별 제휴할인 및 맞춤형</li> <li>• 장의비 할인</li> <li>•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li> </ul>  |

### 가. 본조 개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Congress of Union Retirees of Canada, 이하 CURC)는 캐나다노총(Canada Labour Congress, 이하 CLC)의 가맹조합으로서 1991년 설립된 퇴직자 및 그 배우자를 위한 조직이다. 상급단체인 캐나다노총(CLC)에 대하여 살펴보면, CLC의 전신은 1883년 결성된 직종별 노동조합연맹인 ‘캐나다직업노동회의(Trades and Labour Congress of Canada: TLC)’와 1940년 결성된 일반노조인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Congress of Labour: CCL)’이며, CLC는 이 두 조직이 1956년 4월에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CLC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총연맹으로서 현재

약 31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12개의 광역연합회(Federations of Labour), 130여개의 지방협의회(District Labour Concils), 약 11,600개의 지역지부(Local unions)를 두고 있다. CLC의 회원단체로서 CURC에는 현재 50만 명의 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북아메리카를 가입범위로 하는 미국의 지배적인 노동조합인 국제노동조합(International unions)에 의하여 조직화가 주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국제노조들이 양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보다 전투적인 성향인 캐나다 지부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노조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그 이후 캐나다의 “민족노조”들이 국제노조의 지부를 공략하여 합병 및 조직침탈을 통해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 간 조직경쟁이 캐나다에서 만연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침탈에도 불구하고 CLC와 같은 기존의 거대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는 달성하기 어려운 바, 특히 퇴직자의 이해관계는 재직조합원에 비하여 생활지향적이고 비교적 덜 투쟁적인 성격을 지니고 상호부조 등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므로 소규모의 독립노조로는 거대노조에 비하여 퇴직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퇴직자 조직화는 다른 국가와 다소 상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CURC에서는 상급단체인 CLC의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즉 퇴직자가 퇴직하기 전에 소속된 노동조합이 CLC 산하 가맹조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퇴직자는 CURC에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CURC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조직경쟁으로 인하여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국제노조와 민족노조, 비가맹 독립노조 등 여러 유형의 노동조합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7) 노용진. (2011).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동정책연구, 11(2), 63-105.

그 퇴직자 조직화 역시 그러한 파편화된 조직을 거대한 CURC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에서 상술한다.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CURC는 퇴직자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결성된 조직으로서 본 단체가 퇴직자 조합원을 직접 모집한다. CURC는 멤버십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는데, ①개인 수준에서 조합원이나 배우자(Couple)가 가입하는 유형과 ②단체 수준에서 CURC와의 가맹 내지 회원조합(Affiliate)이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후자, 즉 회원조합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동적으로 CURC의 조합원이 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CURC의 조직구조는 지방(Local area), 지역(Province) 및 전국의 3가지 수준에서 구성된다. 첫째, ‘지방협의회(Local Area Councils)’는 캐나다의 각 주(州)를 대표하는 도시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Calgary, Edmonton, Ottawa, Toronto 등 15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멤버십 유형으로 보면 ①퇴직자 개인이 CURC에 가입하게 되면 그들은 각 도시별로 설치된 지방협의회에 소속되고, ②CURC와의 회원조합(Affiliate)이 CURC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산하에 퇴직자分会(Retiree Chapters)가 있으면 지방협의회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sup>8)</sup> 둘째, 지방보다 상위 수준인 지역(Province) 수준에서는 ‘지역연합회(Provincial Federation)’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British Columbia, Alberta, Ontario, Quebec 등 캐나다의 주(州)에 따라 9개 연합회가 설립되어 있다. 셋째, 그보다 더 상위 수준인 전국(Nation) 단위에서는 CURC의 위원장(President)을 포함하는 7명<sup>9)</sup>의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가 위치하며, 이들은 2년마다 대표자회의(Execu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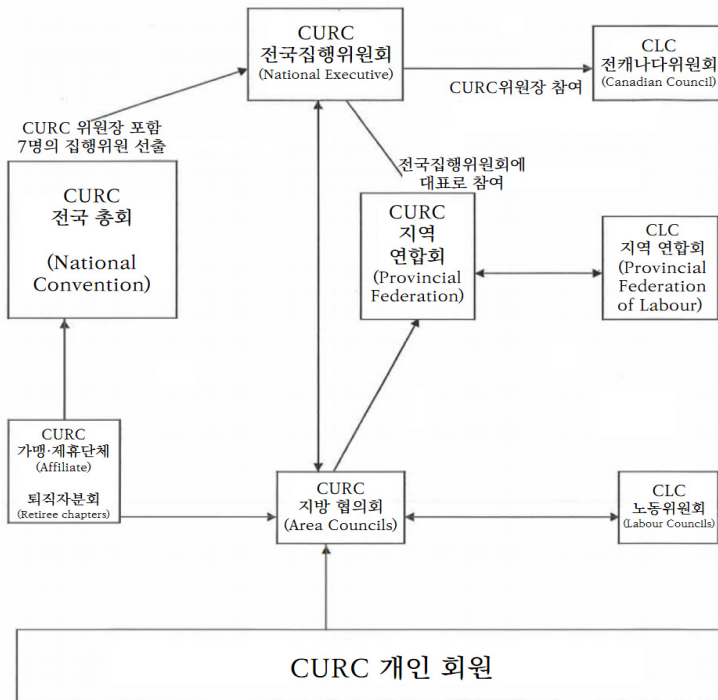
8) 만약 CURC 가맹단체가 산하 퇴직자분회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퇴직자는 CURC에 직접 가입하여 지역협의회의 일원으로 소속될 수 있다.

9) 위원장(President), 제1부위원장(First Vice-President), 제2부위원장(Second Vice-President), 사무처장(Treasurer), 서기(Recording Secretary), 일반집행위원 2인 등 총 7인.

Council)를 개최하여 CURC의 전략적 업무를 총괄한다. 전국집행위원회는 CLC 총회에 2명의 대표자를 내세울 권리를 가진다.

한편 CURC는 2년마다 전국총회(National Convention)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전국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한다. 또한 CURC의 위원장은 상급단체 CLC의 협의체인 전캐나다위원회(Canadian Council)에 참석하여 퇴직자를 대표한다. 아래 [그림 2-1]은 CURC의 조직구조를 간략히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sup>10)</sup>

[그림 2-1]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CURC)의 조직구조



10) <https://www.cmg.ca/en/wp-content/uploads/2016/02/Part-4b-CURC-Info.pdf>

##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비록 CURC가 CLC의 가맹단체이기는 하나 분권화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CLC의 각 가맹단체에 대한 영향력은 적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은 각 개별노조 및 가맹단체에 있다. 따라서 CURC의 조합원의 지위는 CLC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CURC 내에서는 완전한 정회원으로서 인정된다. CURC 규약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CURC의 조합원 및 CURC에 가맹·제휴한(affiliated) 퇴직자분회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제7조 제1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2) 조합원의 의무

전술한 바와 같이 CURC에의 가입방식은 개인과 단체 수준에서 상이한데 조합원 개인 및 가입단체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우선 조합원 개인의 경우 멤버십 기간마다 조합비가 달라지는데 1년 25달러, 2년 35달러, 3년 50달러를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에 35달러, 2년에 45달러, 3년에 80달러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퇴직자 인원수에 따라 조합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연 50달러, 100인 초과 300인 이하는 연 75달러, 300인 초과 500인 이하는 연 100달러, 500인 초과 750인 이하는 연 150달러, 750인 초과 1,000인 이하는 연 200달러, 그 이상은 연 400달러를 CURC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캐나다 퇴직자조합회의 조합비

| 구분    |           | 기간/인원         | 조합비   |
|-------|-----------|---------------|-------|
| 개인 회원 | 조합원 개인    | 1년            | \$25  |
|       |           | 2년            | \$35  |
|       |           | 3년            | \$50  |
|       | 조합원 + 배우자 | 1년            | \$35  |
|       |           | 2년            | \$45  |
|       |           | 3년            | \$80  |
| 단체 회원 |           | 100인 이하       | \$50  |
|       |           | 101인 ~ 300인   | \$75  |
|       |           | 301인 ~ 500인   | \$100 |
|       |           | 501인 ~ 750인   | \$150 |
|       |           | 751인 ~ 1,000인 | \$200 |
|       |           | 1,000인 초과     | \$400 |

###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CURC는 퇴직자 등 고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크게 3가지 분야에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CURC 제휴의 특별 건강·상해·사망보험 및 여행보험을 제공한다. 특히 건강보험(Extended Health Care)은 약처방과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치과치료는 물론 보청기와 안경 등 보조기구까지 보장되며 조합원의 재정상황 및 건강상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둘째, 장의비(funeral costs)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장례를 미리 예약하면 예약 당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등 별도의 등록이 없더라도 장의비 할인 혜택은 적용된다. 특히 유가족에 대한 애도상담(grief counselling)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CURC 제휴의 특별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을 제공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령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 감퇴에 따른 추돌사고에 대하여 첫 사고인 경우에는 그의 과실을 묻지 않고 100% 보장해준다.

## 7. 영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UNISON)

〈표 2-11〉 영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영국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년 공무원, 공공근로, 보건서비스 부문 노조 통합으로 결성</li> <li>• 128만 명의 조합원, 12개 지역 1,200여개 지부</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2년 간 UNISON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한 자</li> </ul>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세션 : 지부(Branch) 수준</li> <li>• 지역 퇴직자 위원회 : 지역(Regional) 수준</li> <li>• 전국 퇴직자 위원회 : 본조/전국(National) 수준</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의 모든 수준에서의 활동·발언·참여권 보장</li> <li>• 현직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제외한 사안에 대한 투표권 보장</li> </ul>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5파운드 조합비 납부 (평생회원제도)</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조합원으로서의 Full Membership을 받을 수 없음.</li> <li>• 퇴직자조합원으로서 새로 발생하는 혜택은 없으나 기존 일반 조합원 당시 가입한 본조 제휴 보험이나 할인 혜택은 유지</li> </ul> |

### 가. 본조 개요

영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UNISON은 128만 조합원이 소속된 영국의 최대 노동조합으로 1993년 공무원노동조합(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Association), 공공근로자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Public Employees), 공공보건서비스노동조합(Confederation of Health Service Employees)이 통합되어 결성되었다. 영국 내 12개 지역 1,200여개의 지부(Branches)를 두고 있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영국의 퇴직자 조직화는 계급 기반 연대를 건설하고 모든 고령노동자를 보호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퇴직할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연금수급권과 노후자금 보전을 주요 이슈로 한다. 즉 영국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재건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일환으로 고령자가 충분한 자금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고용주로부터의 불충분한 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연금제도의 구축을 모색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노조는 젊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열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수급권을 보호함으로써 ‘고령층의 영구적 노동시장 이탈’을 동시에 추구하였다<sup>11)</sup>. 이에 따라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부의 청년연장정책에 반대하고 조기퇴직경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퇴직자 조합원과 재직 조합원의 관계는 일종의 ‘세대간 협약(Intergenerational compact)’으로서, 고령자들이 연금을 받는 대가로 일자리를 빼앗기면서 꾸준히 재협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은 정치적 행동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sup>12)</sup>. 요컨대 영국의 퇴직자 조직화는 비단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닌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맞물려 세대 간 연대를 통한 조합원의 동원과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령자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UNISON은 퇴직자 조합원 제도 및 이를 조직화한 영국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UNISON의 퇴직자 조직화는 본조의 체계적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직자 조합원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본조는 규약으로 퇴직자 조직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핸드북 등을 배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자 조합원이 보다 성공적으로 퇴직자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 Flynn, M. (2017). Age and Industrial Relations in Class-Based and Enterprise Unions. *Managing the Ageing Workforce in the East and the West*, 141.

12) Flynn, M., & Croucher, R. (2006). Retired members in a British un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0(3), 593-603.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우선 퇴직자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UNISON의 퇴직자 조합원은 퇴직하는 날로부터 최소 2년 간 UNISON의 조합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경우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UNISON이 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직자기구(Retired Members’ Organisation)’는 ‘퇴직자섹션(Retired Members’ Section)’, ‘지역퇴직자위원회(Regional Retired Members’ Committee)’, ‘전국퇴직자위원회(Retired Members’ National Committee)’로 구분된다. 첫째, 퇴직자 조합원은 과거 자신이 소속했던 지부(Branch)에 결성된 ‘퇴직자섹션’에 속하거나 거주지 인근 지부의 퇴직자섹션에 소속할 수 있다. 퇴직자섹션은 퇴직자조합원이 그 모임의 간사(Retired Members’ Secretary)가 되어 자발적·주도적으로 조직된다. 둘째, 보다 광역의 지역(Region) 노동조합 소속 퇴직자 조합원은 ‘지역퇴직자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셋째, UNISON 본조 산하 집행위원회(The National Executive Council)는 ‘전국퇴직자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지역퇴직자위원회의 장이 전국퇴직자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전국퇴직자위원회는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본조 총회에 2명의 대표를 세울 수 있다.

####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퇴직자 조합원은 지부(Branch), 지역(Regional), 전국(National) 등 UNISON의 모든 수준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현재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급여와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투표권을 가진다.

##### 2) 조합원의 의무

퇴직자 조합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15파운드의 조합비를 1회 납부하여야

한다. 즉 퇴직자 조합원은 1회의 조합비 납부를 통하여 평생회원이 된다.

###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UNISON은 본조 규약 부칙에서 퇴직자 조합원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의 ‘완전한 회원으로서의 혜택(Full Membership Benefits)’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기존 일반 조합원 때 가입했던 본조 제휴 보험이나 제품·서비스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즉 퇴직자 조합원으로서의 가입 및 신분변경에 따른 새롭게 창설되는 물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퇴직자 조합원은 UNISON의 정치적·조직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퇴직자 조합원은 유사 시 본조의 자체적인 복리후생 서비스인 ‘UNISON 복지회(Welfare)’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UNISON Welfare에는 법률적 자문,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 8. 독일서비스노동조합 (Ver.di)

〈표 2-12〉 독일 Ver.di의 퇴직자 조직화

| 구분          | 내용   |
|-------------|--|
| 국가          | 독일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언론노조, 공공·운수·교통노조, 사무직노조, 금융노조, 통신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통합하여 결성</li> <li>• 결성 당시 300만 명의 세계 최대 단일산별노조, 현재 200만</li> <li>• 13개 산업분야에 걸쳐 전국, 광역, 구역, 지역/기업, 조합원 등 5개 수준으로 조직된 매트릭스 조직구조</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조(Ver.di) 소속 여부와 무관한 고령자 (Seniorinnen und Senioren setzen; Senior citizen)</li> </ul>  |
| 조직방식 및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조합원 : Ver.di가 고령자조합원을 직접 모집·관리</li> <li>• 간부 : 구역, 광역, 전국의 3개 수준에 따라 고령자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령자조합원이 간부로서 활동</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통상) 조합원, 즉 정회원으로 인정됨</li> </ul>  |

| 구분     | 내용  |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전 평균 소득의 0.5% 수준의 비용을 조합비로 납부</li> <li>• 최소 조합비는 월 €2.50</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세금·생활·심리 관련 개인 상담</li> <li>• 응급전화·주치의 서비스, 운동 프로그램 제공</li> <li>• 노동·사회법원 소송에서의 법적 지원</li> </ul> |

### 가. 본조 개요

Ver.di(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는 2001년 독일 언론노동조합(IG Medien), 공공·운수·교통노동조합(ÖTV), 사무직노동조합(DAG), 상업·은행·보험노동조합(HBV), 통신·체신노동조합(DPG) 등 5개 산별노동조합이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300만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의 단일산별노동조합이었으나 이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현재 약 2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Ver.di는 13개의 산업분야(Fachbereiche) - 금융업, 공공서비스, 보건·복지사업, 보험업, 교육·과학연구, 공무원, 공공기관, 미디어·예술산업, 정보통신산업, 우편·물류업, 교통·운수, 도소매업 - 별로 조합원(Mitglieder), 기업 및 지역(Ortsebene), 구역(Bezirke, 85개), 광역(Landesbezirke, 11개), 전국(Bundesvorstand und Bundesverwaltung)의 5개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는 일종의 “매트릭스 조직구조”의 성격을 지닌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독일은 다른 국가와 달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민주주의적인 역사적 맥락을 지닌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로서, 노사 관계에 있어 거시적 산업 및 국가 수준의 합의가 여전히 표준으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주로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r Deutsche Gewerkschaftsbund, 이하 DGB)과 독일연방사용자단체(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이하 BDA) 및 정부의 3자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13)</sup>. 즉 독일에서는 연금수급이나 정년 등에 관한 이슈를 특정 노동조합 출신 퇴직자에 한정된 지엽적·국부적인 측면에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노년층’ 내지 ‘실업자’의 문제로 광범위하게 다루는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이 노동조합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응되는 독일 기본법으로부터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단체(Vereinigungen)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Jedermann) 그리고 모든 직업(Alle Berufe)에 대해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4)</sup>.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사례인 Ver.di는 규약에서 8가지의 조합원 자격으로 청년, (재직)근로자, 공무원, 엔지니어·기술자 등 전문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이민자, 고령자,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가입대상으로 ‘퇴직자’가 아닌 고령자(Seniorinnen und Senioren setzen; Senior citizen)와 실업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Ver.di는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이 아닌 고령자나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Ver.di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조직화에 주목하고 있고, 실제 Ver.di에 가입한 고령자 조합원은 현재 약 44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r.di의 고령자 조직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편 Ver.di의 고령자 조합원에 대한 조직화는 “고령자 위원회(Senioren-Ausschuss)”를 통해 이루어진다.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노동조합은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에 활동의 중심을

13) Flynn, M., Upchurch, M., Muller-Camen, M., & Schroder, H. (2013). Trade union responses to ageing workforces in the UK and Germany. *Human Relations*, 66(1), 45-64.

14) 박지순 (2011).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학술연구용역보고서, 고용노동부.

두고 있으므로 비교적 ‘중앙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게 Ver.di는 본조가 고령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직접 관리한다.

또한 Ver.di는 구역(Bezirke), 광역(Landesbezirke), 전국(Bund)의 세 가지 각 수준별 고령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고령자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이전에 재직·소속했던 구역의 일원으로 남게 되지만 기존에 ver.di의 재직조합원이 아니었던 자도 고령자 조합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자신이 원하는 구역이나 수준의 고령자 위원회에서 간부로 활동할 수 있다. Ver.di 규약에 따르면 각 수준의 고령자 위원회는 고령자 조합원으로 구성된 각 수준의 고령자 회의(Senioren-Konferenzen)에서 선출된다. 예컨대 구역 고령자 위원회는 구역 고령자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고령자 위원회는 최소 1년에 3번 개최되어 모임을 가져야 한다.

한편 전국 수준의 고령자 위원회(Bundessenioren-Ausschuss, 이하 BSA)는 고령자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최고기구로 기능하는데 Ver.di가 추진하는 고령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은 모두 BSA 소관이다. 또한 BSA는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Ver.di의 최고기구인 전국총회(Bundeskongress)에서 고령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 라. 고령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고령자 조합원은 Ver.di 규약 상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자격 중 하나이므로, 비록 대부분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Ver.di의 이른바 ‘정회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sup>15)</sup>

---

15)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지는 못해서, 퇴직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Ver.di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

2) 조합원의 의무

Ver.di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령자 조합원은 퇴직 전 평균 월수입의 0.5%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평균 월수입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하도록 규약에서 규정한 점과 비교하였을 때 고령자 조합원이 일반적으로 은퇴 내지 퇴직한 자임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최저 조합비로 월 €2.50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Ver.di에 가입된 고령자 조합원은 연령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우선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연금보험에 대한 법률적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또는 노동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예컨대 재활조치에 대한 거부나 장기요양보험 인정요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원한다. 그 외에도 병원 예약 없이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전화 핫라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낙상·화재·감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Das sichere Haus, DSH)도 제공한다.

9. 이탈리아노동자총연맹(CGIL) 퇴직자노조(Spi)

〈표 2-13〉 이탈리아 CGIL의 퇴직자 조직화

| 구 분        | 내 용  |
|------------|--|
| 국가         | 이탈리아   |
| 본조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4년 설립. 약 550만 명의 조합원</li> <li>• 금속, 농업, 건설, 운수, 비정규직, 퇴직자 등 12개 가맹조직</li> <li>• 19개 광역단위 연맹, 118개 지방단위 조합, 1800개 기초조직</li> </ul> |
| 퇴직자조합 가입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GIL 가맹노조 조합원으로 퇴직한 자</li> </ul>  |
| 조직방식 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GIL 가맹조직으로서 독립적 퇴직자조합</li> </ul>   |

| 구 분         | 내 용   |
|-------------|---|
| 조직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수준에서 조직 : 기초조직(분회), 지방, 광역, 전국 수준</li> <li>• 3개 기관 :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li> <li>• 7개 부서 : 조직, 연금, 사회·보건, 권리, 정책, 국제, 사회적교섭</li> </ul>                                |
| 조합원 지위 및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조합원(정회원)의 지위로서 모든 권리를 가짐.</li> </ul>  |
| 조합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액에 따라 0.5~0.7%의 조합비 납부</li> </ul>  |
| 조합원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포털 “Pensionsati.it” 운영, 연금, 건강, 사기범죄방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li> <li>• 세무지원센터(CAAF)를 통한 재무관련 이슈 조언·해결</li> <li>• 고령자협회(Auser)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교육프로그램</li> </ul> |

### 가. 본조 개요

이탈리아노동자총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이하 CGIL)은 1890년경부터 시작된 지역노동운동에 의해 1906년 최초로 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된 이후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 전면 금지되었다가 파시스트 정권이 붕괴한 후 1944년 6월 창립된 이탈리아 최고(最古)의 노동조합연맹이다. CGIL의 조합원은 약 546만 명이며, 현재 CGIL 산하 가맹조직으로는 금속노조(Federazione Impiegati Operai Metallurgici, FIOM), 농업노조(Federazione Lavoratori Agro Industria, FLAI), 건설노조(Federazione Italiana Lavoratori Legno Edili e Affini, FILLEA), 운수노조(Federazione Italiana Lavoratori Trasporti, FILT), 화학섬유노조(Federazione Italiana Lavoratori Chimica Tessile Energia Manifatture, FILCTEM), 상업관광서비스노조(Federazione Italiana Lavoratori Commercio Albergo Mensa e Servizi, FILCAMS), 신용보험노조(Federazione Italiana Sindacato Assicurazioni e Credito, FISAC), 비정규직노조(Nuove Identità di Lavoro, NIdiL), 통신노조(Sindacato Lavoratori della Comunicazione, SLC), 교직원노조(Federazione Lavoratori della Conoscenza, FLC), 공공노조(Lavoratori della Funzione Pubblica, FP)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퇴직자노조(연금노조)(*Sindacato Pensionati Italiani*, 이하 *SpI*)는 *CGIL*의 가맹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편 *CGIL*의 조직수준별로 보면 19개 광역단위 연맹(*Sindacato Regionale*) 및 2개 자치지역연맹, 118개 지방단위 조합(*Sindacato Territoriale*) 및 1800여개의 기초조직(*Lega*)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해외 19개국에도 *CGIL*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나. 퇴직자 조직화 개요

전 유럽을 휩쓸었던 68운동의 여파로 이탈리아에서는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1969년 가을, 금속노동자들의 계약갱신을 둘러싸고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노사 간에 거대한 대결국면이 펼쳐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이라 한다. 이에 따라 *CGIL*을 포함한 이탈리아의 3대 노총인 ‘이탈리아 노동자조합동맹(*CISL*)’과 ‘이탈리아 노동자조합(*UIL*)’ 내의 금속노조가 모두 연합하여 격렬한 투쟁을 지속하였고, 결국 그 해 12월 산업경영자협회와 주40시간 근로제 및 유급집회 등을 포함한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후 이듬해에는 국회에서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을 입안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에 따라 1968년 이후 이탈리아의 각 산업섹터에서의 노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CGIL*의 경우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 조합원 수가 약 66%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격렬한 투쟁은 사용자로 하여금 생산시스템의 합리화를 추구하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노조조직률이 높았던 산업섹터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직 연령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뜨거운 가을’ 이후 노조운동의 성과를 달성했던 현 퇴직자들은 계속하여 노동조합의 정치적·조직적 자원을 동원·활용하고자 본조에 남고자 하였고 퇴직자 조직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퇴직자 조직화를 제도적으로 도와준 것이 바로 1970년대 중반에 ‘조합비 연금 공제제도(*Check-off*)’였다. 즉 *CGIL* 등의 노조총연맹은 이탈리아의

각종 연금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퇴직자의 연금액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CGIL 등을 비롯한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에서 퇴직자 조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CGIL의 550만 조합원 중 spi에 소속된 퇴직자 조합원은 약 270만 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sup>16)</sup>. 다만 최근들어 퇴직자조합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재직자조합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CGIL의 경우 퇴직자조합원의 비율이 7.6% 감소한 반면 재직자조합원의 비율은 4.2% 증가하였다<sup>17)</sup>.

#### 다. 구체적 조직화 방식

우선 조합원의 자격 및 범위부터 살펴보면 CGIL 산하 가맹노조의 조합원이었다가 만 6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된 자는 자동적으로 Spi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발적인 가입신청에 의하여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노조로부터 떠나 Spi에 가입할 수 있다. 즉 Spi는 산업섹터에 상관없이 퇴직자 내지 연금생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합으로서, 그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가 퇴직하면서 하나의 노조에 소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pi는 기초조직 내지 분회 (Lega), 지방 수준(Sindacato Territoriale), 광역 수준(Sindacato Regionale) 및 전국(Sindacato Nazionale) 수준의 4가지 수준에서 퇴직자를 조직화하는데 총회(Congresso), 운영위원회(Comitato Direttivo), 사무국(Segreteria)으로 구성된다. 우선 총회는 전략의 수립, 세부 목표의 계획 및 설정을 담당하는 Spi의 최고위 기관으로, 정기적으로는 4년마다 한 번 열리며 임시총회는 후술할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의결을 통해 개최된다. 둘째,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전략 및

16) Chiarini, B. (1999). The composition of union membership: the role of pensioners in Italy.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7(4), 577-600.

17)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ETUI) <https://www.worker-participation.eu/National-Industrial-Relations/Countries/Italy/Trade-Unions>

세부목표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정부협상이나 노조 내부활동 전반을 관할한다. 셋째, 사무국은 운영위원회가 꾸리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수행하는 실무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공식 출판물의 제작 및 배부 등도 사무국이 맡고 있다.

한편 Spi는 조합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7가지 부서(Dipartimenti)로 구분되는데, 조직부서(Organizzazione), 연금부서(Previdenza), 사회·보건 복지 부서(Socio-Sanitario), 권리·복지부서(Diritti e Benessere), 사회정책 및 젠더정책부서(Politiche Sociali e di Genere), 국제부서(Internazionale), 사회적교섭부서(Contrattazione Sociale)가 조직되어 있다.

## 라. 퇴직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Spi가 총연맹인 CGIL의 산하 가맹단체이면서 동시에 CGIL은 Spi를 통하여 퇴직자 및 연금생활자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생활조건 등과 연계된 문제들에 대하여 연맹차원의 협상기능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pi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데, Spi 규약에서는 조합원이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조합으로부터의 정보를 얻을 권리를 규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Spi의 전 범위의 활동에서의 조합원 간 동등한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예를 들어 Spi의 규약은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로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Spi의 조합원은 CGIL의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조합원의 의무

전술한 바와 같이 CGIL은 만 65세에 이르러 조합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소속된 노조로부터 벗어나 퇴직자노조 Spi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퇴직자 등은 Spi에 가입하고 소속되기 위하여 연금액에 따라 0.5%에서 0.7%를 조합비로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3) 조합원에 대한 혜택

전술한 바와 같이 Spi는 7가지 부서를 구성하여 그에 따라 퇴직자조합원 및 연금생활자에게 연금, 사회복지 및 보건, 생애복지 등 전방위에 걸쳐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한 조합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Spi의 “Pensionsati.it”라는 포털사이트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Spi는 퇴직자 조합원에게 필요한 연금, 건강, 사기범죄방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CGIL의 하부기구를 통한 퇴직자조합원 지원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GIL은 그 하부 기구로서 세무지원센터인 CAAF(Centro Autorizzato di Assistenza Fiscale; Authorized Tax Assistan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자 조합원 및 연금생활자들의 세무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소득확인 및 신고, 부동산세, 양도세, 연금수령액의 계산, 모기지론 등의 재무상담 등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CGIL과 Spi가 공동으로 설립한 고령자협회인 “Auser”에서는 퇴직자조합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네트워킹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단 여가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2-14〉 퇴직자 조직화 해외사례 요약표

| 노조명                    | 국가                      | 본조 개요  | 가입 범위             | 조직방식·구조   | 조합원 지위·권리  | 조합원 의무   | 조합원 혜택   |
|------------------------|-------------------------|--|-------------------|---|--|--|--|
| 1. 북미 건설공 노동조합 (LIUNA)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3년 설립, 건설공(건설공) 대상, 조합원 50만 명</li> <li>• 9개 지구, 44개 구역, 400여 개 지역지부</li> </ul> | 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직화</li> <li>• 본조·지부의 제휴·협력단체의 성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조합원과 달리 '명예회원'의 성격 (별도 권리 규정 없음)</li> <li>• 총회 발언권·투표권 부여되지 않음</li> <li>• 정치활동, 캠페인, 멘토링 등 통상적 조합 활동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협의회별로 정한 조합비 월별 납부</li> <li>• 본조에 저촉되는 활동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조·지부로부터의 공식적 혜택 없음</li> <li>• 협의회 내 각종 위원회(committee) 결성을 통한 자족적 해결</li> <li>• 법률적·정치적 사안 정보 공유</li> </ul> |
| 2.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UAW)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5년 설립 조합원 수 40만 명</li> <li>• 8개 지역, 600개 이상의 지부</li> </ul>                     | 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W 본조가 조직화</li> <li>1) 지부(Local union) 산하 퇴직자 분회</li> <li>2) 지구(Area) 퇴직자 협의회</li> <li>3) 지역(Regional) 퇴직자 협의회</li> <li>4) 국제(International) 퇴직자 자문위원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선거의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일반조합원의 권리를 가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비 납부 의무 없음 (월\$3 자발적 납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조합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음 (예 : Union Plus 복리후생)</li> <li>• 여가활동 지원, 운동 프로그램 제공, 지역 봉사활동 참여</li> </ul>               |
| 3. Workers United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결성.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대상 85,000명</li> <li>• 상급단체로 북미 서비스노조(SEIU)</li> </ul>       | 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조가 조직한 퇴직자 협회 (Association)</li> <li>2) 퇴직자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역 퇴직자 지부 (Local chapter)</li> <li>3) 퇴직자협회와 퇴직자 지부 간 퇴직자 지역회(Regional Assembly)</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 참여권은 있으나, 투표권 및 임원 피선거권은 없음</li> <li>• 퇴직자조합원 500명 당 1인의 대표가 본조 총회에서 투표권 행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3달러 조합비 납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조합원과 동일 (금융서비스, 주택 서비스, 각종 보험, 할인 등)</li> <li>• 퇴직자지부만의 서비스 (은퇴컨설팅, 연금계산, 사망보상청구 등)</li> </ul>           |

| 노조명                         | 국가                      | 본조 개요   | 가입 범위                            | 조직방식·구조  | 조합원 지위·권리  | 조합원 의무   | 조합원 혜택  |
|-----------------------------|-------------------------|---|----------------------------------|--|--|--|---|
| 4. 미국 통신 노동조합 (CWA)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7년 설립, 조합원 70만 명</li> <li>8개 구역(District) 또는 7개 산업센터</li> </ul>                       | 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조의 규약에 의하여 '퇴직자 협의회' 조직</li> <li>퇴직자 조합원은 각 퇴직자 협의회(분회) 중 하나에 참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회비(1회 25달러) 납부</li> <li>그 외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의무 부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금융서비스, 주택서비스, 각종 보험, 할인 등)</li> </ul>   |
| 5. 미국 우편 노동조합 (APWA)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1년 설립, 미국 우정청 근로자 대상</li> <li>20만 명의 조합원, 각 주에 걸쳐 900개 이상의 지역지부</li> </ul>            | 미국 우정청 근로자로서 본조 조합원 중에서 퇴직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자 조합원 가입</li> <li>10명 이상의 퇴직자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자 지부 결성</li> <li>본조 신하 퇴직지원부가 퇴직자 조직화를 총괄 관리·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3달러 조합비 납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조합원과 동일 (금융서비스, 주택서비스, 각종 보험, 할인 등)</li> <li>퇴직지원부의 서비스 (은퇴컨설팅, 연금계산, 사망보상청구 등)</li> </ul>    |
| 6. 캐나다노총 (CLC) 퇴직자조합 (CURC)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년 캐나다노총 (CLC)의 가맹단체로 설립</li> <li>조합원 수 약 50만 명</li> </ul>                            | 전 소속과 무관한 퇴직자. (단체도 가입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C의 가맹단체이지만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li> <li>도시별(지방협의회), 주별(지역연합회), 전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C와 무관하게 CURC 내에서 온전한 정회원</li> <li>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권리 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비 납부 의무 (1년 \$25, 2년 \$35, 3년 \$50)</li> <li>단체가 가입하는 경우 인원에 따른 차등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 상해, 사망, 여행보험 맞춤형 및 특별제휴 할인</li> <li>장의비 할인 및 무료 애도상담</li> <li>고령자 맞춤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li> </ul> |
| 7. 영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UNISON)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3년 공무원, 공공 근로, 보건서비스 부문 노조 통합으로 결성</li> <li>128만 명의 조합원, 12개 지역 1,200여개 지부</li> </ul> | 최소 2년 간 UNISON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한 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직자 세션 : 지부 (Branch) 수준</li> <li>2) 지역 퇴직자 위원회 : 지역(Regional) 수준</li> <li>3) 전국 퇴직자 위원회 : 본조/전국 (National) 수준</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의 모든 수준에서의 활동·발언·참여권 보장</li> <li>현직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제외한 사안에 대한 투표권 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 15파운드 조합비 납부 (평생회원제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조합원에 비해 제한된 혜택</li> <li>본조 재후 보험, 제품할인 서비스 유지</li> </ul>                                      |

| 노조명                               | 국가   | 본조 개요   | 가입 범위                       | 조직방식·구조  | 조합원 지위·권리   | 조합원 의무   | 조합원 혜택   |
|-----------------------------------|------|---|-----------------------------|--|---|--|--|
| 8. 독일 서비스 노동조합 Ver.di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년 언론, 교통, 사무직, 금융, 통신 등 5개 노조 통합 결성</li> <li>200만 명의 조합원, 13개 산업분야</li> </ul>  | 본조 소속 여부와 무관한 고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조가 고령자 조합원으로서 직접 관리</li> <li>구역, 광역, 전국의 3개 수준에 따라 고령자 위원회 구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조합원 (정회원)의 자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 전 월평균 소득의 0.5%를 조합비로 납부</li> <li>최소 조합비 2.5유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보험·세금·심리 상담</li> <li>주치의·응급전화 서비스</li> <li>노동·사회법원 소송 법적 지원</li> </ul>  |
| 9. 이탈리아 노동자 총연맹 (CGIL) 연금노조 (Spi)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4년 설립, 조합원 550만 명</li> <li>금속, 농업, 건설, 비정규직, 퇴직자 등 12개 가맹조직</li> <li>19개 광역단위 연맹, 118개 지방단위 조합, 1800개 이상의 기초조직</li> </ul> | CGIL 가맹 노조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i(퇴직자조합) : CGIL 가맹조직으로서 독립적</li> <li>4개 수준 : 기초조직 (분회), 지방, 광역, 전국 수준</li> <li>3개 기관 : 총회, 운영 위원회, 사무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조합원 (정회원)의 자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액에 따라 0.5~0.7%의 조합비 납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서(연금, 사회·보건, 권리, 정책 등) 별 프로그램 운영 및 시행</li> <li>세무지원센터(CAAF): 재무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 및 지원</li> <li>고령자협회(Auser):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li> </ul> |







제 3 장

결 론







## 제3장 결론

### 제1절 해외 사례조사 요약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의 경우 대부분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어 주로 산업이나 직종별 노동조합이 퇴직한 조합원을 위한 조직화를 하고 있었다. 전국단위 총연합단체에서 조직화한 사례는 캐나다노총과 이탈리아노동자총연맹의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총연합단체 및 초기업단위 노동조합들이 퇴직자 조합을 조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본조 노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본조의 입장에서도 조합의 조직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점을 살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퇴직자 조합과 본조 노동조합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조직들에서 퇴직자의 조합가입 자격에서 있어 약간의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본조 노동조합원 중에서 퇴직한 자가 가입대상이었으나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에는 전 소속과 무관한 고령자나 퇴직자를 모두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사례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조합원이었던 자 중 퇴직한 자로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퇴직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조직구조 형태의 결정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본조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결정하고 본조가 구성해놓은 조직구조의 틀 속에서 퇴직자들이

활동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본조 노동조합의 조직과 연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본조와의 연계성은 본조의 가맹단체이면서도 강한 독립성을 보유한 캐나다 사례부터 본조 산하 퇴직자 지원부서가 퇴직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를 지원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일반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일반조합원과는 무관하게 퇴직자조합 내에서 정회원으로 온전한 지위와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현직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서 투표권을 보유하는 등 제한된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명예조합원의 지위로 정치활동, 캠페인, 멘토링 등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조합원의 의무도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평생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1-3년 단위로 차등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의 0.5%를 납부하는 방식, 연금수급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퇴직자 조합원이 누리는 혜택은 법률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 일반 조합원이 보유하는 복리후생 서비스를 동일하게 공유하는 경우, 지역 봉사활동 및 운동 등 여가활동지원, 은퇴컨설팅, 연금계산, 금융 및 주택서비스, 각종 보험 컨설팅 및 할인, 세금 및 재무 상담, 장의비 할인, 법원 소송 지원, 주치의 등 응급전화 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인되었다.

연구과정 중에서 각국의 퇴직자 조합 설립배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설명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국의 경우 1949년 포드자동차에서 퇴직자가 만65세에 월100달러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NLRB(한국의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기업단위의 연금 제도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정한 것이 촉발제가 되어 당시 UAW 위원장

이 이러한 형태의 기업단위 연금제도를 지지하면서 기업단위에서 퇴직한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화가 활성화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일찍 은퇴하되 은퇴 후의 충분한 연금보장 등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일종의 세대 간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직자 조직화가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젊은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동시에 은퇴를 대비하는 고령자들에게도 정치세력화를 통해 양호한 은퇴 후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수준의 삼자 조합주의의 전통이 장기간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고령자, 퇴직자,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제2절 한국 퇴직자 조직화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해외 퇴직자 조직화 사례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조합 총연맹 수준에서 퇴직자 조직화 방안에 대한 거시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서구 노동조합주의는 기존의 보편적 연금수급권과 조직 퇴직의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세력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서구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퇴직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쳐왔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주로 평생고용모델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고용안정성을 더욱 확대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는 젊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총연맹 차원에서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여 퇴직자 조직화를 통해 전체 노동운동 진영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퇴직이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일정한 수준의 정년연장을 위한 노력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다. 퇴직이후 고령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퇴직자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 자원의 규모의 경제 달성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의 퇴직자 조합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자 조합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자 조합이 오히려 갈등요소로 불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퇴직자 조합의 산업·직종·지역별 연합단체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의 기금을 구성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는 미국노총의 Union Plus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총연맹차원에서 사업을 구축하여 전체 소속 조합원들이 공통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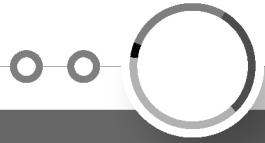
셋째, 노동조합이 지역단위 고령자/퇴직자 일자리 및 복지 거버넌스를 형성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도적으로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60세를 전후로 한 정년을 맞이한 퇴직자들은 연금수급연령까지 일정한 기간 소득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유지하여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퇴직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복지 사업의 전달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울산 울주군의 경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이

노베이션의 노동조합, 현자현중 퇴직노동자모임 간사, 한국노총 울산본부 정책 실장이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퇴직자 산림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향후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연맹수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단위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단위 조직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퇴직자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퇴직자 조직화 방안



# 부 록





부록 1

## 북미건설공노동조합(LIUNA) 규약 중 퇴직자 관련 조항

### 제2조

### 목적 및 권한

#### 섹션 1. 목적

본 노동조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상호 이익,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할 구역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이름하에 단결시킨다.
- (b) 모든 해당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임금, 급여, 교육, 고용시간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확립한다.
- (c)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대중 및 사용자의 인정을 확보한다.
- (d) 회원조합(affiliates) 및 구성원 간의 보건, 복지, 현장의 안전 관행 및 교육, 직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를 촉진하여, 스스로의 권리, 책임, 복지 및 이익 전반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 (e) 해당 노동자의 기술, 효율성 및 실무지식을 증진, 육성, 개발 및 발전시킨다.
- (f) 조합을 고용하는 산업의 사회적 효용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촉진·육성·발전시킨다.
- (g) 산업평화를 촉진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킨다.
- (h) 본 조직과 기타 노동운동 조직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조합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i) 고용 기회를 개선·발전·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한다.
- (j) 본 조직 및 노동운동 전체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이해를 증진

한다.

- (k) 노동자 및 모든 국민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복지를 증진·보호·발전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다.
- (l) 조합원, 가족 및 친구들이 참여하는 선거등록, 투표, 정치교육 및 시민활동 등의 수단을 통해 친구를 지지하고 적을 물리치는 사무엘 고펜스의 철학을 실현한다.
- (m) 적합하거나 필수적인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 (n) 북미건설공노동조합과 그 회원조합, 임원 및 조합원의 이익을 방어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활동에 참여한다.
- (o) 본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노조관할권(trade jurisdiction)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 (p) 모든 국가 노동자들의 이해를 더욱 증진하고 삶의 조건을 향상시킨다.
- (q) 퇴직자에게 연대를 유지하고 사회 및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은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조합의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퇴직조합원들의 특수한 문제에 조합이 관심을 갖도록 한다.
- (r)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한다.

## **섹션 2. 권한(Powers)**

- (a) 본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은 입법, 집행 및 사법 권한을 갖는다.
- (b) 주권(sov​er​eign authority)으로서, 지역노조, 지역협의회, 지역조직 기금 및 기타 종속기관의 현장을 발행하고, 그들의 권한과 기술 또는 관할을 정의 하며, 기존 현장을 개정·합병·철회한다. 또한 아래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러한 산하기관을 통제·규율·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 (c) 본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산하기관의 권리, 특권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리, 특권 및 의무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제18조

**회원조합(Affiliates)의 의무**

**섹션 1.** 각각 소속 지역노조, 지부협의회와 그 임원은 통일된 지역노조 정관, 통일된 지부협의회 정관, 북미건설공노동조합 정관에 따르며, 각각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섹션 2.** 북미건설공노동조합으로부터 지역노조, 지부협의회 또는 그밖의 산하기관에 의한 이탈을 시도하거나, 자금 분할을 도모하거나, 북미건설공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되거나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단체와 제휴하는 모든 지역노조, 지부협의회 또는 산하기관 및 임원은 총 집행위원회의 통지, 공청회, 벌금, 정직, 제명 또는 신탁관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섹션 3.** 각 지역노조는 재무처장(Secretary-Treasurer)을 통해 북미건설공노동조합에 지역노조의 각 조합원에 대해 당월 지불해야 할 세금으로 1인당, 2017년 1월 1일부터 \$19, 2018년 1월 1일부터 \$19.50, 2019년 1월 1일부터 \$20을 납부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조합원 등록 시 \$65의 가입비를 납부하며, 재가입의 경우 \$30을 납부한다. 각 가입비와 재가입비는 등록된 달의 1인당 세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퇴직자의 경우 각 지역노조는 북미건설공노동조합에 매월 퇴직조합원 1인당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섹션 4.** 지역노조가 규정한 기한 내에 북미건설공노동조합에 1인당 세금, 가입비, 재가입비 또는 기타 적법한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통고 없이 정지된(suspend)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섹션 5.** 지역 노조가 북미건설공노동조합에 대한 지불 및/또는 보고서를 위조

또는 체납하거나, 1인당 세금, 가입비, 재가입비 또는 기타 법률에 가입되어 있는 지부협의회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총 집행 위원회의 고발, 청문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북미건설공노동조합에 의해 지역노조가 중단되거나 신탁 관리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위변조 및/또는 연체와 관련된 금액 외에 조사 및 감사비용이 사정될 수 있다.

## 제6조

### 임원 추천 및 선출

#### 섹션 1. 추천

- (a) “공천회의”로 알려진 특별회의는 선거연도 5월에 개최되는 지역노조의 정기 회의 20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지역 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 채워져야 할 모든 공직과 직위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 (b) 공천회의 30일 전에서 15일 전에 해당 지부의 조합비를 지불한(good standing) 조합원에게 최종 알려진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서에는 공식인 관리와 직위,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 (c) 3명의 선거 심사원(judges)은 지부이사회에 의해 공천회의보다 먼저 임명한다. 그들은 후보자가 아니어야 하나, 퇴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d) 선출된 관리 또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보수는 임명 전 공천 회의, 회원에게 사전 서면 통지 시, 또는 본 문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에 따른 급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공천 회의 직전 정기 조합원회의에서 확정한다.
- (e) 조합비를 지불한(in good standing) 회원은 지부 공직에 지명될 자격이

있다. 해당 조합은 앞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f) 적절히 지명된 모든 조합원은 조합비를 지불한 다른 2명의 조합원들에 의해 공천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지역노조, 지역협의회 또는 북미건설공노동 조합을 위한 업무회의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 한 조합원 투표로 즉시 임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공천이 받아들여지고 선거 심사원에 의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후보자의 부적격에 대한 항의, 항소, 또는 총 회장으로부터의 철회 승인이 없는 한 가용성(unavailability)이나 비자발성을 이유로 후보자 스스로 입후보를 철회할 권리가 없다.

**섹션 6.** 소집 시 일하지 않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회원은 지역노조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퇴직조합원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하여 지역노조회의에서 발언 및 투표권을 갖는다.

부록 2

## 북미건설공노동조합(LIUNA) 퇴직자협의회 규약

개정된 바와 같이

### 제1조 명칭

명칭은 퇴직자협의회 번호-R, 시, 주(州)로 한다.

### 제2조 목적

이 조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기간 동안 북미건설공노동조합 퇴직자의 우애관계 유지
-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퇴직조합원에게 사회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
-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퇴직조합원에게 당 노조의 프로그램과 정책, 그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
- 진보적 프로그램 및 기타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정치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퇴직조합원의 지지 확보
- 퇴직조합원의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북미건설공노동조합, 지역노조 및 지역협의회와의 관심 환기



### 제3조 조합원

조합원은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퇴직자에게 개방된다.

### 제4조 임원

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Secretary-Treasurer), 서기(Recording Secretary) 및 3명의 감사(Trustees)로 하며,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다.

선출직 임원은 후원 회원조합(sponsoring affiliates)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재임한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선거 후 첫 번째 정기조합원회의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사회자에 의해 임명된다.

그러나 임원은 조합원이 투표한 후 건설공노동조합 총위원장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허가된다. 모든 해당 조치는 임명을 위한 회의에 앞서 행해야 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다른 공석들은 이사회 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함으로써 채워진다.

선출된 모든 임원들은 북미건설공노동조합 내에서 평판이 좋아야 하며,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좋은 평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위원장:** 위원장은 모든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모든 위원회를 임명하고,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 위원장 부재 또는 불능 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모든 자금의 관리자가 된다.

서기: 서기는 이사회 및 모든 회의 기록을 유지하며, 회의를 통지한다.

감사: 감사는 조합의 재정자금 및 자산을 감독하고, 연 1회 장부를 검사한 후 장부의 상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서기 및 3명의 감사.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를 통제·관리하고, 예산을 책정하며, 합의된 지출을 허가·시행하고, 조직의 프로그램 및 정책이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발전시킨다.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이사회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모든 이사회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는 조합원 5명이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3회 연속 회의 또는 특별 회의에 불참하는 이사회 임원은 이사회 임원으로서의 활동이 중지된다.

이사회의 임원 및 어떤 조합원도 조직을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조직을 대신하여 조합원이 이전에 행한 지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환급받을 수 있다.

## 제6조 제한 사항

본 조합은 영리목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자산, 소득 또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거나,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단체가 해산될 경우, 허가서와 자산, 기록을 후원하는 지역노조나 지부협의회에 반납해야 한다.

본 조합의 조합원의 법적 책임은 적법하게 승인된 회비, 수수료 또는 평가에 한정된다.

본 조합은 북미건설공노동조합, 후원하는 지역노조 또는 지부협의회를 직간접적으로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본 조합은 북미건설공노동조합, 후원하는 지역노조 또는 지부협의회외의 정책에 반하는 활동, 발언 또는 간행물을 발간 및 수행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합은 집행위원회 또는 후원하는 지역노조 또는 지부협의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 제7조 개정

이 정관은 북미건설공노동조합의 총 집행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 제8조 선거

이사회의 임원과 구성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이사회는 선거일을 정하며, 사무국장은 회원에게 선거일 30일 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투표용지의 인쇄, 배포,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회원의 이름은 사전에 지명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어느 투표 용지에도 게재될 수 없다.

## 제9조 조합비

각 조합의 조합비는 이사회에서 수시로 결정하며, 일반 조합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조합원회의

이사회는 매년 회원 회의의 횟수,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월례 회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사회는 조합원의 희망과 상황에 부합하도록 회의 일정을 가감할 수 있다.

조합원 특별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가 소집할 수 있다.

특별총회의 통지는 우편으로 한다.

## 부록 3

###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CURC) 규약

#### 서문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Congress of Union Retirees of Canada, CURC)는 캐나다의 퇴직자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상호 간의, 그리고 그들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하에 설립되었다.

이 주장에는 캐나다자유노조 퇴직자 조직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입법적 목표를 달성하고, 그들의 집단적인 힘, 능력,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열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는 모든 사람의 평화, 자유, 안보 추구를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항상 노동운동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정의라는 높은 이상과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는 자신의 막중한 책임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육성하고 수호하기 위한 미래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 제1조 명칭 및 본부

**제1항:** 본 조직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Congress of Union Retirees of Canada, CURC)로 명명되며,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 CLC)의 직접인가(direct charter)를 받아 이에 소속되어 있다.

**제2항:** 전국 본부는 캐나다노총의 전국 본부와 같다.

## 제2조 목표

**제1항:** 캐나다노총 소속 노조 퇴직조합원의 지부 또는 클럽, 그리고 소속 노조 및 캐나다노총의 퇴직 간사나 직원들을 대표하는 다른 조직들을 통합하고, 퇴직 노조원들과 그 파트너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단체교섭 동향, 사회경제·교육·입법·정치 이벤트를 모니터링한다.

**제2항:** 캐나다노총의 정책과 일치하는, 모든 퇴직자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법을 도입하고 제정하도록 입법자들에게 청원한다.

**제3항:** 모든 퇴직자들의 공정한 생활수준을 위해 투쟁한다.

**제4항:** 유사한 목표를 가진 다른 조직과 협력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한다.

**제5항:** 모든 노조로 하여금 퇴직자를 적절한 지방(provincial) 및 전국적 구조 내 지역 차원(local level)의 클럽이나 지부로 조직하고,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제6항:** 퇴직자 지방(provincial) 및 주(territorial) 연맹,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지역협의회(local area councils)를 조직하여 캐나다노총의 인가를 받은 적절한 조직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7항:** 캐나다퇴직자대표회의의 개인 회원가입을 장려한다.

### 제3조 조합원 자격

**제1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a) 캐나다노총에 소속된 노조 퇴직자 조직의 지역본부, 클럽 혹은 지부
- (b) 일정한 지리적 지역의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소속 노조 퇴직자 조직의 지역 협의회
- (c) 일정한 지리적 지역의 캐나다퇴직자대회 소속 노조 퇴직자 조직의 지방 (provincial) 및 주(territorial) 연맹
- (d) 캐나다노총 소속 국내 노조 퇴직자 조직
- (e) 캐나다 노총 직원, 소속 노조의 퇴직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조직
- (f) 캐나다 노총 소속 노조와 그 협력 조직의 노조 퇴직자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직접 가입하여 지역협의회 및 연맹에 참여 가능
- (g) 직접 인가를 받은 노조 퇴직자 조직, 지회, 클럽 또는 지부

**제2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소속된 모든 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 투표에 의해 가입이 정지되거나 퇴출될 수 있다.

### 제4조 회비

**제1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소속 노조 퇴직자 단체의 지회, 클럽, 지부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 납부를 위한 신규 회비 구조: 선착순 회원 100명은 연간 50달러, 101번째부터 ~ 300번째까지는 연간 75달러, 301번째부터 500번째까지는 연간 100달러, 501번째부터 750번째까지는 연간 150달러, 751번째부터 1,000번째까지는 200달러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1001번째 회원부터는 연간 400달러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지역협의회는 연간 25달러의 회비를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납부해야 한다. 그들은 노조 퇴직자 지방/주 연맹에 가입하여 계속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제3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소속 노조 퇴직자 지방/주 연맹은 회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50달러, 500명 초과인 경우에는 연간 100달러를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로 납부해야한다.

**제4항:** 캐나다노총에 소속된 각 국내/국제 노조 퇴직자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회비 납부를 위한 신규 회비 구조: 선착순 100명은 연간 50달러, 101번째~300번째는 연간 75달러, 301~500번째는 연간 100달러, 501~750번째는 연간 150달러, 751~1000번째는 연간 200달러를 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1001번째부터는 연간 4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제5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개인 회원에 대한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년 - 1인 회원 - 25달러

1년 - 커플 회원 - 35달러

2년 - 1인 회원 - 35달러

2년 - 커플 회원 - 45달러

3년 - 1인 회원 - 50달러

3년 - 커플 회원 - 80달러

이 연회비는 퇴직조합원들과 50세가 된 현역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6항:** 지역협의회에 대한 리베이트는 해당 회원의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협의회로 송금되어야 한다. 리베이트의 송금처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될 경우,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전국 사무처장(National Treasurer) 및



관련 지역협의회의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제7항:** 제3조 - 회원 자격의 제1항 (a), (b) 및 (g)에 명시된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의 40퍼센트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남아 있어야 한다.

제3조 - 회원 자격의 제 1항 (a), (b) 및 (g)에 명시된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의 30퍼센트는 지방/주 연맹에 보내야 한다.

제3조 - 회원 자격의 제 1항 (a), (b) 및 (g)에 명시된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중 30퍼센트는 가장 가까운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지역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노조 퇴직자 지방/주 연맹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불 비율은 해당 지방/주 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조합 퇴직자가 납부한 개별 연회비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 임원(officers)

**제1항:**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 사무처장, 서기, 2인의 일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은 여성을 대표하며, 1명은 가시적 소수 인종과 원주민을 대표한다.

모든 총회 이후,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와 전체 위원에게 자문을 제공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대의원(delegate)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전국집행회의(National Executive Council) 이전에 (또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제2항:** 집행회의(Executive Council)

집행회의는 집행위원회와 각 지방/주 퇴직자 연맹의 1인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집행회의는 위원 과반수 혹은 집행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직접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되어야 한다.

**제3항:** 임원 선출

각 임원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및 본 대회에 속하거나 혹은 본 대회가 승인한 퇴직 조합원 조직에 연회비를 지불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모든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위원과 집행위원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위원직에 출마할 자격이 생기기 전에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개인조합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제4항:**

임원 선거는 총회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총회 마지막 날에 실시된다.

**제5항:**

위원 선거는 비밀투표로 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선출되며,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2차 및 추가적인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2차 투표와 그 이후의 투표에서는 직전 투표에서 가장 낮은 득표수를 받은 후보가 탈락한다. 최종 동수 투표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항:**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선출되어야 하는 직책의 경우, 각각의 대의원은 선출될 후보 전체 인원에게 투표해야 한다.

**제7항:** 각 임원의 선출은 다음 위원회를 위한 후보 등록 접수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8항:** 모든 임원은 본 대회에 취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임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진심으로 서약한다. 나는 내가 위원으로 일하게 될 집행위원회 및 집행회의에 최대한 모두 참석할 것이며, 임기가 끝날 때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혹은 내 후임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을 본 조합회의에 속한 모든 재산이나 자금을 양도할 것이다."

**제9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총회가 산회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10항:** 비용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제6조 임원의 의무

**제1항:** 위원장(President)

위원장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최고 집행임원이 된다. 위원장은 모든 공식 문서에 서명하고, 정기 및 특별 총회와 자신이 소집한 집행위원회 및 집행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직책에 맞게 부위원장들에게 직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위원장은 규약을 해석할 권한이 있으며, 집행위원회나 총회에 의해 번복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해석은 결정적이고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 관련 사안 및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업무내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 제1부위원장(First Vice-President)

제1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제1부위원장은 다음 총회 때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제3항:** 제2부위원장(Second Vice-President)

제2부위원장은 제1부위원장과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조한다.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이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2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부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제2부위원장은 다음 총회까지 제1

부위원장직을 맡는다.

**제4항:** 사무처장(Treasurer)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사무처장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최고 회계책임자가 된다.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 회의와 집행 회의 시 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사무처장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총회 전, 적시에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보고서가 집행위원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에 대해 확증 보증(bond)하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로 돈을 수령하고 지불한다. 본 대회에 가입한 캐나다노총에 속한 노조 퇴직자 조직의 지회, 클럽 및 지부, 그리고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속한 노조 퇴직자 조직의 지역 협의회의 연락처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각각 지방의 지역협의회(Regional Area Council)와 공유될 수 있다.

**제5항:** 서기(Recording Secretary)

서기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기록을 보관한다. 서기는 조직의 모든 서신을 처리하고 삼 년마다 열리는 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집행회의 소집 공고를 한다.

**제6항:** 일반 집행위원(Members-At-Large of the Executive)

여성 분야 담당 일반 집행위원의 임무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며,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재정이 뒷받침되는 경우, 캐나다노총의 관련 위원회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다.

가시적 소수민족 및 원주민 담당 일반 집행위원의 의무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모든 수준에서 가시적 소수민족 및 원주민의 참여를 촉진 및 증가시키고,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재정이 뒷받침되는 경우, 캐나다노총의 관련 위원회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다.

**제7항:** 서명권자(Signing Officers)

재무 및 법률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위원들은 위원장, 제1부위원장 및 제2부위원장이며, 투표는 이들 중 두 명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 제7조 총회 (Conventions)

**제1항:** 총회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최고 통치기구이며, 본 조 제10항 및 제9조에 규정된 사안을 제외하고 그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항:** 총회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서 3년마다 개최되며, 최소한 12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3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소속 퇴직 조합원의 지회, 클럽 및 지부는 100명 당 2명의 대의원(delegate)을 대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제4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각 지역협의회는 첫 200명 조합원에 대해 2명의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추가 조합원 350명마다 혹은 추가 조합원 수가 350명의 절반 이상일 경우 한 명의 대의원을 더 선발할 수 있다.

**제5항:** 노조 퇴직자 조직 연맹들은 각각 2명의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6항:**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소속의 국내 노조 퇴직자 조직은 각각 2명의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7항:** 캐나다노총 및 소속 노조의 퇴직자와 직원을 대표하는 조직은 2명의 대의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8항:** 선출직 임원은 직책상 총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9항:** 총회가 접수할 수 있는 결의안(resolution)은 본 회의에 소속된 지역

및 시/지방의 노조 퇴직자 조직, 연맹, 국내의 소속 조직, 집행위원회, 혹은 캐나다노총이나 그 소속 노조의 퇴직자와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해당 단체장의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이다. 결의안은 총회 75일 전까지 기록 위원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하나의 주제와 150개 단어로 제한된다.

**제10항:** 위 항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결의안, 청원 또는 탄원(appeal)은 집행위원회에 회부되며,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를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항:** 총회에 등록된 대의원의 4분의 1이 업무처리를 위한 정족수가 된다.

**제12항:** 총회의 업무 규칙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부재시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람이 지정된 시간에 모든 정기 및 특별총회의 의장역을 수행한다. 위원장과 지명된 사람이 모두 없을 경우, 집행위원회가 의장을 선정한다.
- (2) 편파적인 성격의 문제는 논의될 수 없다.
- (3) 발언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마이크 중 하나로 이동해야 한다. 의장이 호명하면 대의원은 본인의 이름과 조직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에 대한 발언만 해야 한다.
- (4) 연설은 최대 3분으로 제한되나, 결의안 제출 시에는 5분까지 허용된다.
- (5) 대의원은 발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언을 마칠 때까지 주제에 대한 번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 (6) 대의원은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7)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받은 대의원은 관련 문제나 요구 사안이 결정될 때까지 착석한다.

- (8) 대의원이 총회 내 행동양식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의장은 이 대의원을 호명하고 총회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설명한 후 철회해야 하며, 총회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한다.
- (9)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상정되면 의장은 이를 발표한 후 "본 사안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질문한다. 어떤 대의원도 발언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상정된다.
- (10) 사안은 대의원 1명당 1표를 기준으로 거수 또는 기립 투표로 결정될 수 있다. 출석대의원의 3분의 1에 의해 호명투표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때 각 대의원은 1표를 행사한다.
- (11) 2명의 대표가 의장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appeal)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의장의 결정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해당결정에 대한 의장의 설명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할 수 없다.
- (12) 의장은 다른 대표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모든 사안에 투표할 수 있다.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13) 이전 사안이 제출되면 어느 한 발의안에 대한 논의나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다수가 "이 사안은 지금 상정되어야 한다"고 투표한다면 원안은 토론 없이 상정되어야 한다. 만약 그 사안을 상정하자는 제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토론은 계속된다.
- (14) 위원회는 특정 사안들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결의안을 통합하거나 종합적인 안을 준비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위원회가 수용 가능한 것만 개정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 보고서를 재회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안은 가능하다.
- (15) 대의원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발언한 후, 해당 제안을 재회부하기 위해

발의를 제출할 수 없다.

- (16) 재회부를 위한 발의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없으며, 재청될 경우, 해당 사안은 즉시 총회에 회부된다.
- (17) 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는 총회의 결정이 되며, 부결될 경우 위원회에 보고서를 재회부하여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18) 총회 전에 사안이 계류 중일 경우 이전 사안을 회부하거나, 언급하거나, 정해진 시간 동안 연기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발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이 발의 중 하나라도 무효화될 경우, 이는 중간 절차 후에 다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 (19) 발의자가 발의안의 재고 요청을 발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 발의가 재고될 수 있다. 다음 회기에 발의를 재고할 수 있도록 발의 통지가 이뤄지며, 해당 발의 통지는 표결 자격을 갖춘 대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으면 표결 가능하다.
- (20) 집행위원회는 총회시간을 정할 수 있다.
- (21) 본 규칙이나 명령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부르노의 규율’(Bourinot’s Rules of Order)을 따른다.

**제13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총회에 의한 모든 결정은 총회가 산회되는 즉시 발효된다.

### 제8조 확증 보증(Bonding)

재정을 다루는 모든 위원은 캐나다노총의 확증 보증절차를 통해 확증 보증되어야 한다.



## 제9조 규약의 개정

규약 개정안은 총회 최소 75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참가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약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통과를 참가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제10조

### 제1항:

- (a) 노조 퇴직자 지방/주 연맹이나 지역협의회와 같이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종속된 중앙기구들은 집행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설립 및 승인된다.
- (b) 노조 퇴직자의 조직, 지회, 클럽 또는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직가입을 위한 인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규약과 노조 퇴직자 지방/주 연맹이나 지역협의회와 동일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2항:** 이렇게 승인된 조직은 제4조 제2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3항:

- (a)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의 집행위원회는 지방/주 연맹 및 지역협의회들의 행위, 활동, 업무, 재정 및 재산에 관한 규정(rule)을 발행하고, 해당 기관이나 그 위원과 관련한 규율을 제시한다.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대한 탄원(appeal)이 가능하다. 탄원의 대상이었던 판단은 탄원이 있을 때까지 온전히 유효하다.

- (b) 조합 퇴직자들의 지방/주 연맹 및 지역협의회는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보다 더 높은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연회비가 승인된다.

**제4항:**

위에 언급된 현장의 지부 해산, 정지, 취소시, 모든 자금과 자산은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에 귀속되어야 한다. 자금 및 재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가 관련 자금 및 재산의 회수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된 자금 및 재산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되며, 회수 이후 캐나다퇴직자조합회의는 회수된 자금 및 재산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아야 한다.